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68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정진욱·오세희·박해철

이상식 • 양부남 • 이기헌

황정아 • 이개호 • 조인철

강준현 · 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중국·대 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 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 설).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 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
원) ①・② (생 략)	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
	<u>하여야 한다.</u>
<u>③</u> ~ <u>⑥</u> (생 략)	<u>④</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